

1. 폐지이유

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학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
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33725호, 2024. 2. 20. 공포·시행)되어
개정 전 조문의 위임에 따라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규정하던 교육부령을
폐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학원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4. 4. 8. ~ 5. 20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대상 아님

교육부령 제 호

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폐지령안

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